

학생IR센터 규정

제정 2022. 9. 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생IR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과 기능) ① 학생IR센터는 학칙 제1조(목적)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, 대내외 정책 변경에 따른 대학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, 대학 교육의 성과와 질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의 데이터 수집·관리·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
2. 본 대학교의 핵심역량, 전공역량에 대한 조사 및 연구
3.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의 개발과 관리
4. CanDo마일리지 및 CanDo장학제도 운영
5. 센터 운영에 관한 통계분석, 기록물, 센터 홈페이지 관리
6.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, 예·결산 보고
7. 센터 소관 위원회 운영
8.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9.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.

제3조(학생IR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IR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두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2. 교무처, 기획처, 학생처, 입학처, 인재개발처의 부처장, 단과대학 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의 간사를 둔다.
3.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
2. 학생특성데이터(STBD)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3.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심의
4. 기타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

부 칙(2022. 9. 6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